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12, 2025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2025-13: 미국 APMA 프로그램, 2024 년 APA 통계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2024 년 사전 승인 및 상호합의(APMA)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APMA 프로그램의 실적, 구조, 그리고 활동을 설명하는 26 번째 보고서로,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에 타결된 APA는 142건으로, 이는 2023년의 156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 2024년에는 APA 갱신 비율이 58%로, 2023년의 47%보다 증가했습니다.
-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타결된 APA 중 절반 이상은 해외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 타결된 APA의 대부분은 유형자산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2%는 무형자산의 사용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IRS가 APMA 프로그램에서 가장 분석이 어려운 거래 유형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 APA 타결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평균 33.5 개월로 전년 대비(2023년 42개월) 8.5개월 감소하였습니다.

독일: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 브랜드 라이선스 사용료(Brand Licensing Fees)

최근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분이 세무당국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 소재한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브랜드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미국계 기업의 독일 계열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다수의 독일 기업들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무조사 시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및 거래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시 주요 검토사항, 문서화 및 위험 최소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의 필요성 입증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브랜드 사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효익에 대한 명확하고 근거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독일 그룹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효익을 정량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세한 문서화가 자주 요구되며, 이는 최초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할 때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료 금액의 적정성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라이선스 사용료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기업에게 주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타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특하거나 특화된 상표권의 경우, 제 3 자 간 유사 거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 소득접근법 (Income Method), 비용접근법 (Cost Method)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산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사용료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조건, 지역 차이, 산업 특성 등이 사용료 금액에 영향을 미쳐 거래의 비교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 사용이라도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사용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상표권 또는 무형자산에 대해 독립된 제 3 자 간에 설정되는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한 사용료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CUP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브랜드의 사용 방식, 지리적 범위, 라이선스 기간, 계약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교대상거래가 실제로(부분적으로라도)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중 브랜드 인지도, 라이선스 독점성, 시장 내 포지셔닝 등의 차이는 상당한 가격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차이나 향후 독점권 부여에 대한 계약조건 역시 가격 비교에 명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CUP 방법의 적용을 복잡하게 하며, 비교대상거래에 유의미한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독립기업 간 비교(hypothetical arm's length comparison) 방식 역시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이 방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제 3 자 간의 유사한 거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제 3 자가 특정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가정은 이론적 가정이나 검증할 수 없는 모델에 따른 계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거나 방법론상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며, 그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CUP 방법이나 가상의 독립기업 간 비교방법이 적절한 라이선스 사용료 금액을 결정하는 데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선택과 비교가능거래 가격에 대한 해석은 항상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하든지 기업들은 정상가격 분석 및 검토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하여 세무조사시 브랜드 사용료 금액의 합리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점권, 법적 보호, 지리적 범위, 개발 단계, 미래 이익 등의 요소들은 독립기업 간 거래에 적합한 브랜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계약 근거

서면으로 작성된 라이선스 계약은 세무조사시 사용료 금액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계약에는 라이선스 권리, 비용, 지불 조건, 평가 방법 등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형식보다 실질"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관되고 투명한 라이선스 계산방식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사용 범위

브랜드 사용 범위는 라이선스 사용료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를 설정하려면 브랜드가 비즈니스 운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지,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만 사용되는지,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지,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한된 시장이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브랜드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독일 세무조사에서 라이선스 사용료 금액의 합리성의 판단하고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이 세법의 요건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사용료가 실제 시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와 지리적 범위와 같은 관련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사용료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서 및 적용된 평가 방법에 대해 문서화를 구비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비교 가능한 거래를 식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4-법규국조-0247, 2025. 03. 17.

제목: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스테인레스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일본에 자회사(100%출자)로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에 해당하여 '20사업연도까 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18년 외감법 전면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1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 '22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 계 법인 등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03 관세

최신 대법원 판례: 2022 두 45647 (2025.04.24)

제목: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은 조사기간 연장절차 없이 조사종료일 이후 이루어진 조사행위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조사기간 경과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조사권 남용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사건개요

- 대법원은 최근 ○○○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주식회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해당 모회사가 소유한 브랜드 제품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회사는 제3국(방글라데시 등)에서 위탁 생산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현지 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본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대금청구서상 미지급금 역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약 99억 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세관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단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관의 조사기간 및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이미 종료된 조사를 사실상 연장해 재조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전자송달 방식의 적법성 ▲미지급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 쟁점	원고(회사) 주장	대법원 판단
세관 조사기간 및 절차 적법성	법정 조사기간을 초과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연장했으므로 위법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으로 조사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권리 침해도 아님
재조사 여부	이미 종료된 조사를 사실상 연장해 새로운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	기존 조사의 연장에 불과하며, 새로운 조사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음
전자송달 방식의 적법성	경정통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교부한 것은 위법	원고가 전자송달에 사전 동의하고 수령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
미지급금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본사가 청구한 금액은 단순한 내부 정산금으로, 수입물품 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됨

- 원고 측은 세관이 법정 조사기간을 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이어간 점, 전자송달 방식으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미지급금의 성격 등이 모두 위법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모두 수용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세관의 추가 조사 행위는 기존 조사의 연장에 불과하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자송달 방식에 대해 원고가 사전 동의하고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인 미지급금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일부"라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요 판결 요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의 조사 연장은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으로, 조사권 남용이 아니다.
- 전자송달은 원고의 동의 및 수령 확인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
- 본사가 자회사에 청구한 미지급금은 물품 구매대금의 일부로서,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
- 가산세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세관이 부과한 약 99 억 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미지급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서 명목상 송장가격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대금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관 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자료 제출 태도나 협조 여부가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방식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관 조사에 임할 때 사전 동의 여부, 자료 제출 시점, 수령 확인 등 각종 절차적 행위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